

별첨 3

감사 결과 의견서

위원회
(인)

○감사대상기관 :

○감사위원 :

구 분	내 용	비 고
시정요구사항 (건)		
건의사항 (건)		
기타사항 (건)		

버스노선(420번)연장운행청원 심사보고서

청원
번호 35

2000년 5월 일
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 및 청원인 : 2000년 4월 14일,
김순자 외 813명
(송파구 잠실동

320 우성아파트
103-603)

나. 소개의원 : 이용부의원(새천년민주당, 송
파제2선거구, 기획경제위)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
회 제1차 교통위원회
(2000년 4월 21일 상정·의결)

2. 청원요지

○송파구 잠실, 석촌, 삼전동 일대에서 수서

<p>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므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풍납동에서 신천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우신운수의 420번 노선버스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노선 : 풍납동(영파여고) → 중앙병원 정문 → 롯데월드 → 광양불고기 → 등기소 → 탄천제2교 → 학여울 → 수서경찰서 - 제2노선 : 풍납동(영파여고) → 중앙병원 정문 → 롯데월드 → 종합운동장 → 삼성역 → 학여울 → 수서경찰서까지 연장운행 요망 <p>3. 취지설명 요지 (취지설명 : 이용부의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송파구 잠실·석촌·삼전동 일대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관할 경찰서가 수서에 입지하는 등 강남구 수서지역과는 하나의 생활권이나, 수서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음. ○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풍납동에서 신천역까지 운행하는 우신운수(420번)의 버스노선을 강남구 수서지구까지 연장운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니 지역 주민의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p>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관리실에서는 주민의 요구대로 노선연장운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서경찰서 주변 회차구간이 편도 1차선에 불법주차가 많아 시내버스운행이 적정치 못하고 - 연장노선구간 중에 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 ○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제1노선은 지난 '99년 6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고, 잠실역에서 신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중에서 수서경찰서까지 연장하는 노선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하였으나,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. ○ 수서경찰서 주변 회차구간 불법주차는 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속을 통하여 불법주차를 없애고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문제이지, 버스노선 연장 불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, ○ 좌회전 문제도 경찰과 협조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생각함. ○ 그 동안 시내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중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므로, 이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버스조합이사장과 부이사장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측 이익을 대변하여 왔고, 버스회사간의 이해상충문제도 영향력 있는 회사의 주장이 관철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. ○ 그 한 예로 상도터널에서 송실대까지 버스노선 연장운행청원도 관할구청과 교통관리실에서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버스노선조정안을 상정하였으나, 결국 회사간 이해 대립으로 부결되므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 ○ 이와 같이 버스노선조정민원은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, 집행부도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점이 있었던 것임. ○ 따라서,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이익집단의 주장만 관철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, 회사간 이해가 상충할 경우 조정하는 것도 관의 의무이고,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관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 <p>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6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7. 소위원회 : 미구성</p> <p>8. 심사결과 ○ “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</p> <p>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11. 의견서 : 별첨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견 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명 : 버스노선(420번)연장운행청원 ○ 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서울특별시장
---	---